

자산보관 위탁계약서(증권 및 현금 등)

에이치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갑”이 보유하는 위탁자산(제2조에서 정의 됨)이 보관업무(이하 “자산보관”이라고 함)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산보관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전 문

- 가. “갑”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위탁 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 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필요한 영업인가 취득 또는 등록 완료를 전제로 “갑”은 “을”을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산보관 업무를 담당할 자산보관기관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을”은 자산보관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적용)

- ①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위탁을 받아 자산보관 업무 및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갑”의 자산보관에 관하여 관련법령(제2조에서 정의된다)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법령 또는 “갑”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서면에 의한



합의로써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투법 및 관련 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1. “관련법령”이라 함은 상법, 부투법, 각 동법 시행령, 각 동법 시행규칙,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등 기타 “갑” 과 “을” 에 대한 업무위탁을 규율하는 일체의 법규를 말한다.
2. “위탁자산”은 “갑”의 자본금과 차입금의 합계액 또는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증권, 현금, 기타 재산으로서, 부동산 및 그러한 부동산을 매각 기타 처분하여 취득한 현금으로서 “갑”이 별도로 선입하는 다른 자산보관기관(이하 “부동산 자산보관기관”)이 보관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갑”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갑” 과의 일반사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부투법상 사무수탁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갑” 과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갑”의 자산의 투자 및 운용과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5. “판매회사”라 함은 “갑” 과의 판매위탁계약에 의하여 “갑”이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6. “관련 수탁회사”라 함은 “갑” 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회사를 말한다.
7. “자산보관계좌”라 함은 “을”이 “갑”이 취득한 증권을 보관하기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갑”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8. “위탁계좌”라 함은 “을”이 “갑”이 취득한 현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갑”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9. “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 및 동법 제5조 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10. “결산기”라 함은 “갑”의 정관에 의한 결산기를 말한다.



제 2 절 자산보관기관의 업무범위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 및 또는 자산관리회사(이하 총칭하여 “갑 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증권의 보관 및 관리

가. 증권의 인수, 인도 및 보관. 단, 자본시장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 증권 등으로 지정된 증권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나. 증권상 인정되는 배당금, 원리금 기타 각종 금원의 수령, 유무상 청약 등 제반권리의 행사

다.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2. 현금의 보관 및 관리

가.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현금의 수령, 지급 및 보관

나.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지급

다.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관련 수탁기관에 대한 보수,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

라.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계좌개설, 폐지 및 변경 업무 (“갑”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자산보관계좌” 또는 “위탁계좌” 이외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 “갑”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요청시 현금(대출금 포함)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바.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3. 해산(청산)관련 업무

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에 따른 보관업무 및 관련 실무 사무

나. 위 가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제4조 (부동산의 신탁)

"갑"은 "갑"이 소유하게 될 부동산을 "을"에게 신탁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자산보관기관에게 신탁하여 보관하기로 한다.

제3절 자산의 보관방법

제5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방법)

- ① “을”은 “갑” 명의의 자산보관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받아 위 자산보관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가 “갑”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갑”이 취득하게 될 증권
 2. 기타 “갑”이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모든 증권
- ② “을”은 보관을 위탁받은 수표·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배서 등) 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현금은 “갑” 명의의 위탁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자산관리회사가 “갑”을 위하여(또는 대리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갑”이 처분하게 될 증권을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을 위하여(또는 대리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상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한다.
 1. “을”은 증권상 인정되는 이자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등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현금은 “갑” 명의의 위탁계좌에 보관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갑” 명의의 자산보관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을”은 투자주식의 발행회사로부터 유무상증자 등으로 인한 권리부여 통지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을” 이 그 통지시에 지정한 날까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권리상실에 대하여 “을” 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을” 은 투자주식의 발행회사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있는 경우 그 일시, 장소 및 의안의 요령을 “갑” 의 일반사무수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다.

제6조 (현금의 보관 및 관리방법)

① “을” 은 “갑”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각 호의 현금을 자산관리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령하여 위탁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갑” 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출자된 현금
2. 자산관리회사가 “갑” 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예컨대 “갑” 의 자산(부동산, 증권)을 처분하는 계약, 임대차계약, 자금차입계약 등)에 따라 “갑” 이 취득하게 될 현금
3. “을” 이 위탁받은 증권상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현금(예컨대 이자, 배당금 등)
4. 기타 “갑” 이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모든 현금. 단, 부동산의 매각 기타 처분에 따라 부동산 자산보관기관이 수취하여 보관하는 현금은 제외.

② “을” 은 다음 각 호의 현금을 자산관리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가 그 소관 업무에 의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인출하여 제3자 또는 관련 수탁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가 “갑” 을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예컨대 “갑” 의 자산(부동산, 증권)을 취득하는 계약, 임대차계약, 자금차입계약 등)에 따라 “갑” 이 지급하여야 할 현금
2. “을” 이 자산의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관할법원(또는 등기소) 및 과세권자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현금(제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3. “갑” 이 “을” 및 관련 수탁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수수료 및 비용



4. “갑” 이 지급하여야 할 영업의 비용(제세공과금 등)
5. 기타 “갑” 이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현금

제 4 절 권한과 의무

제7조 (자산 보관 및 관리상의 의무)

- ① “을” 은 “갑” 을 위하여 부투법 등 관련법령과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산보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을” 은 “갑” 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을” 의 고유자산 및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을” 은 “갑 등” 의 지시에 따라 그 자산을 인수, 인도, 수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그 지시받은 내역과 실제 거래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발견한 경우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 그 추가지시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을” 은 매월 “갑” 의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을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와 내역의 서류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내역서 등을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을” 은 보관자산(증권, 현금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보유자산별 잔액명세서를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을” 은 정기통지 이외에도 일반사무수탁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보관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을” 은 일반사무수탁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필요시 보유자산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권한)

- ① “을” 은 관련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 을 위하여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 ② “을” 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증서를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협의하여 “갑” 의 명의로 작성



하거나 그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을”은 위탁자산의 인수, 보유 및 등록 등을 위하여 예탁 또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장부, 관련서류의 비치 및 공시)

-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장부 등 그와 관련된 기록을 “갑”의 청산시 및 관계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갑”, 자산관리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을”에 대하여 자산보관과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부동산투자회사 관련법령이 정하는 “갑”과 관련된 서류(이하 “관련서류”라고 한다)를 “을”의 본점에 비치하고, “갑”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련 수탁회사와의 협조의무)

- ① “을”은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갑”의 관련 수탁회사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갑”의 관련 수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의 자산보관과 관련된 관련법령상 보고, 통지, 공고 및 공시 의무준수를 위한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금지행위 등)

- ① “을” (“을”의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갑”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을 “을”의 고유자산과 혼용하거나 “을” 기타 “갑” 이외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산보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및/또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동 정보 또는 자료를 자산보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기타 관련법령상을 위반하거나 동 법령에 의한 금지 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 ② “을”은 제3자와 “갑”과의 사이에 이해 충돌이 야기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외관상 그러한 이해 충돌이 직간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5 절 보수 및 비용부담

제12조 (보수)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자산보관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갑”이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 및 영업인가(등록)를 득한 이후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부동산에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갑”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보수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보수는 매 결산기 단위로 결산일 이후 “을”이 청구하는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 결산기마다 600만원(연간 1,200만원, VAT 별도)을 현금 지급한다. 다만, “을”의 자산보관 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결산기 수수료는 180일에 대한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이 초과될 경우 매 결산기 단위의 수수료와 6개월이 초과된 기간을 180일에 대한 실제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비용 부담)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자산보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신탁에 따른 등기비용 및 체세공과금, 저결제원에 대한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에 관한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6 절 보증 및 책임

제14조 (진술 및 보증)

-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요건(자본금, 발기인,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 ② “을”은 “갑”에 대하여 “을”이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기관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요건(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 ③ “을”은 “갑”에 대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을”의 임직원이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여 “을”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당해 절차와 기준은 관련법령의 해당규정에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책임과 면책)

- ① “을”이 자산보관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 정관 또는 본 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며, 기타 국가부도·전쟁·천재지변·관련 수탁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② “을”은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이외에 자산보관 과정에서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갑”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7 절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해지 등

제16조 (계약의 효력발생일)



현금의 보관과 관련된 업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을”에 대한 보수 지급은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갑”의 청산종결등기일 또는 제19조에서 정한 계약 해지시까지로 한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제17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 후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 ① 그 이유를 불문하고 (i) “갑”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토교통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ii) “갑”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iii) “갑”의 자산이 모두 처분되어 “갑”이 청산되는 경우, 본 계약은 언제든지 일방 당사자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i) 및 (ii)의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14일 이상의 기간(이하 “시정기간”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따라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갑”에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이 새로운 자산보관회사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 ③ “을”에게 인가취소, 지급불능, 부도, 파산, 화의 등 자산보관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종료시의 조치)

- ① 본 계약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종료되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종료 시점의 “갑”의 증권 및 현금을 “갑”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 및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시점의 최종계산서와 자산보관 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이미 통보한 사항은 “갑”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을”이 “갑”의 자산보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갑”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 또는 “갑”이 지시하는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갑”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이 “갑”의 자산보관 업무를 즉시 인계할 수 있도록 “갑”이 요구하는 필요한 제반 조치(자산보관 상황의 설명, 업무이관 관련 인력확보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을”에게 귀책사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갑”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을”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보관기관으로서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 등과 함께 해당 업무를 계속 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귀속



한다.

제 8 절 기 타

제21조 (양도 및 재위탁)

- ①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자산보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의 사유, 범위 및 조건 등의 관련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비밀 유지)

“을” (“을”의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갑”의 사전승인 또는 관련법령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자산보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지시 및 통보 방식)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상대방 및 관련 수탁회사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하는 지시서 또는 통보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승인권자의 서명 혹은 인감에 의한 지시서 또는 통보서
 2. 암호체계 또는 다른 절차 등에 의하여 진위가 검증된 서신
 3. 우편(등기 또는 항공) 또는 전보
 4. 텔렉스
 5. 팩스전문
 6. 전자서명이 포함된 이메일(Email)
 7.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전송



8. 기타 상호간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전송

- ② 본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시 또는 통보의 경우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당해 회사의 법인인감에 갈음하여 별도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및 관련 수탁회사에게 그 용도를 명시한 사용인감신고서 또는 서명감신고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변경시에도 동일하다.
- ③ 본 조 제1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지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대방 또는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접수 또는 도달시점(팩시밀리의 경우 수령확인 도달 시점)을 그 효력발생시점으로 본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같은 수령 또는 납부 마감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해당시간(관계 법령에 의한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지시서가 접수 또는 도달하여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는 다음날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관계법령의 준용)

본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한 여백]



“갑” 과 “을” 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다.

2022년 7월 15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치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자 : 대표이사 박 영 희 (인)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빌딩)

회 사 명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자 : 대표이사 정 일 문 (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16-81-04504

법인명(단체명) : 한국투자증권 (주)

대표자 : 정일문

개업연월일 : 1974년 09월 16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0168769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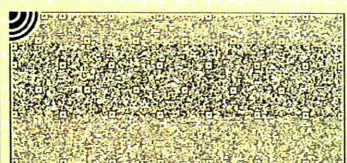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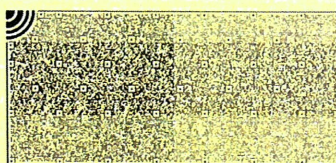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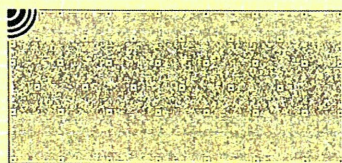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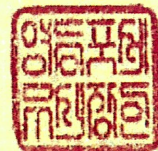
사업의종류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태	금융업, 보험업 제조 금융 서비스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종목	증권, 신탁, 투자자문업 서적출판업 일반금융 금현물중개 임대
---------	--	------------------------------------	-----------------------------	---

발급사유 :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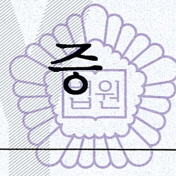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적용일자: 2009년 01월 01일)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21년 0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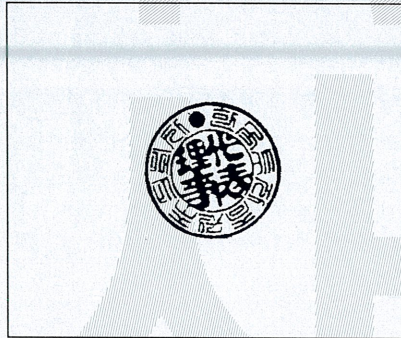
영등포세무서장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0168769



상 호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대표이사 정일문

(64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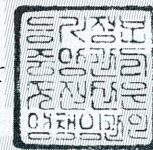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200원 영수함.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11002742419000102161002520092511095100A1K1D1SOL1S1 100

발급확인번호 QAWY-WGYE-NLEO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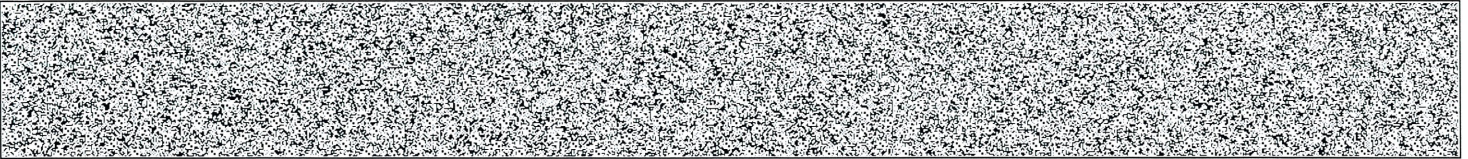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등기번호	019159		
등록번호	110111-0168769		
상 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2003.06.03 변경	2003.06.11 경정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3.07.01 등기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재한다 .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22.03.24 변경	2022.03.28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변경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600,000,000 주	2000.05.25 변경	2000.05.3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35,163,340 주	변경 연월일	
보통주식	35,163,340 주	등기 연월일	
	금 175,816,700,000 원	2019.11.23 변경	2019.11.26 등기

목 적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 투자매매업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2. 투자중개업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3. 집합투자업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4. 신탁업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5. 투자일임업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6. 투자자문업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2)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금융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영 한다.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보험중개사의 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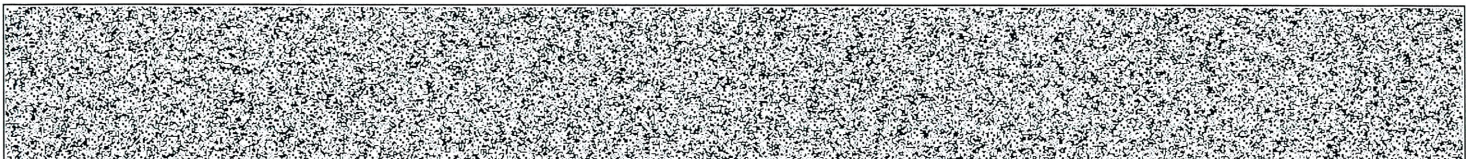


발행번호 119000204670105001710021200925110971209121017091S1 10 발급확인번호 1596-AAWF-NHYI 발행일:2022/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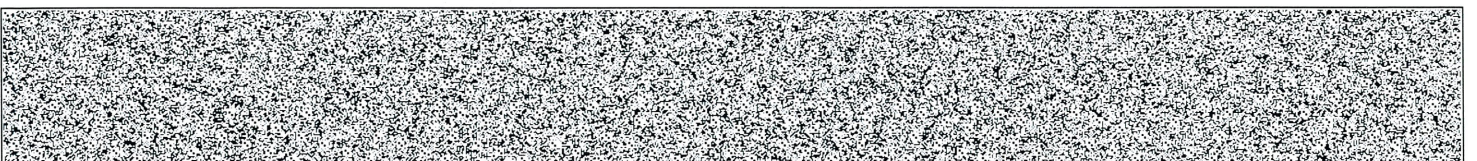
등기번호	019159
------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6.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8.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2.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4.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 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5. 상법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6.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7.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8. 지급보증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19.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20.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21.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22.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23.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2009.05.28	변경	2009.06.04	등기>
2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	<2014.03.20	추가	2014.03.24	등기>
25. 기타 제1호 내지 제24호에 부수하는 업무	<2014.03.20	변경	2014.03.24	등기>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등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모두 영위할 수 있다.	<2014.03.20	변경	2014.03.24	등기>
(4)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업무를 영위한다.	<2014.03.20	변경	2014.03.24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남구 631010-*****					
2005년 03월 31일	취임	2005년 04월 13일	등기		
2006년 05월 18일	중임	2006년 05월 25일	등기		
2007년 05월 23일	중임	2007년 06월 01일	등기		
2008년 05월 29일	중임	2008년 06월 10일	등기		
사내이사 김남구 631010-*****					



등기번호	019159										
2009년 05월 29일	중임	2009년 06월 04일	등기								
2010년 05월 29일	중임	2010년 06월 01일	등기								
2011년 05월 26일	중임	2011년 06월 02일	등기								
2012년 06월 07일	중임	2012년 06월 14일	등기								
2013년 06월 05일	중임	2013년 06월 12일	등기								
2014년 03월 20일	중임	2014년 03월 24일	등기								
2015년 03월 26일	중임	2015년 04월 06일	등기								
2016년 03월 24일	중임	2016년 03월 31일	등기								
2017년 03월 23일	중임	2017년 03월 28일	등기								
2018년 03월 22일	중임	2018년 03월 28일	등기								
2019년 03월 21일	중임	2019년 03월 27일	등기								
2020년 03월 19일	중임	2020년 03월 27일	등기								
2021년 03월 25일	중임	2021년 03월 29일	등기								
2022년 03월 24일	중임	2022년 03월 28일	등기								
사외이사 정영록 580501-*****											
2018년 03월 22일	취임	2018년 03월 28일	등기								
2019년 03월 21일	중임	2019년 03월 27일	등기								
2020년 03월 19일	중임	2020년 03월 27일	등기								
2021년 03월 25일	중임	2021년 03월 29일	등기								
2022년 03월 24일	중임	2022년 03월 28일	등기								
감사위원 정영록 580501-*****											
2018년 03월 22일	취임	2018년 03월 28일	등기								
2019년 03월 21일	중임	2019년 03월 27일	등기								
2020년 03월 19일	중임	2020년 03월 27일	등기								
2021년 03월 25일	중임	2021년 03월 29일	등기								
2022년 03월 24일	중임	2022년 03월 28일	등기								
사내이사 정일문 641126-*****											
2019년 01월 01일	취임	2019년 01월 02일	등기								
2019년 03월 21일	중임	2019년 03월 27일	등기								
2020년 03월 19일	중임	2020년 03월 27일	등기								
2021년 03월 25일	중임	2021년 03월 29일	등기								
2022년 03월 24일	중임	2022년 03월 28일	등기								
대표이사 정일문 6411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8동 1202호(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2019년 01월 01일	취임	2019년 01월 02일	등기								
2019년 03월 21일	중임	2019년 03월 27일	등기								
2020년 03월 19일	중임	2020년 03월 27일	등기								
2021년 03월 25일	중임	2021년 03월 29일	등기								
2022년 03월 24일	중임	2022년 03월 28일	등기								
사외이사 김정기 620224-*****											
2019년 03월 21일	취임	2019년 03월 27일	등기								
2020년 03월 19일	중임	2020년 03월 27일	등기								



등기번호	019159					
2021 년 03 월 25 일 중입	2021 년 03 월 29 일 등기					
2022 년 03 월 24 일 중입	2022 년 03 월 28 일 등기					
감사위원 김정기 620224-*****						
2019 년 03 월 21 일 취임	2019 년 03 월 27 일 등기					
2020 년 03 월 19 일 중입	2020 년 03 월 27 일 등기					
2021 년 03 월 25 일 중입	2021 년 03 월 29 일 등기					
2022 년 03 월 24 일 중입	2022 년 03 월 28 일 등기					
사외이사 조영태 720528-*****						
2019 년 03 월 21 일 취임	2019 년 03 월 27 일 등기					
2020 년 03 월 19 일 중입	2020 년 03 월 27 일 등기					
2021 년 03 월 25 일 중입	2021 년 03 월 29 일 등기					
2022 년 03 월 24 일 중입	2022 년 03 월 28 일 등기					
사외이사 김태원 800302-*****						
2019 년 03 월 21 일 취임	2019 년 03 월 27 일 등기					
2020 년 03 월 19 일 중입	2020 년 03 월 27 일 등기					
2021 년 03 월 25 일 중입	2021 년 03 월 29 일 등기					
2022 년 03 월 24 일 중입	2022 년 03 월 28 일 등기					
사외이사 함춘승 640116-*****						
2021 년 03 월 25 일 취임	2021 년 03 월 29 일 등기					
2022 년 03 월 24 일 중입	2022 년 03 월 28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오태균 610103-*****						
2022 년 03 월 24 일 취임	2022 년 03 월 28 일 등기					
사외이사 최수미 701105-*****						
2022 년 03 월 24 일 취임	2022 년 03 월 28 일 등기					
감사위원 최수미 701105-*****						
2022 년 03 월 24 일 취임	2022 년 03 월 28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흡수합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동원증권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
2005 년 06 월 01 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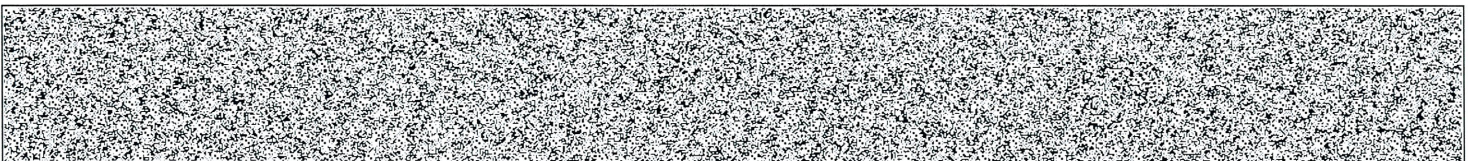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14 년 11 월 26 일 변경 2014 년 12 월 12 일 등기

1. 회사분할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운용지주주식회사 를 설립
2008 년 10 월 02 일 등기

주 식 매 수 선택 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내 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	019159
------	--------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2000년 05월 25일 설정 2000년 05월 30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주식의종류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2012년 06월 07일 변경 2012년 06월 14일 등기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다. 위 가호 와 나호 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2000년 05월 25일 설정 2000년 05월 30일 등기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2000년 05월 25일 설정 2000년 05월 30일 등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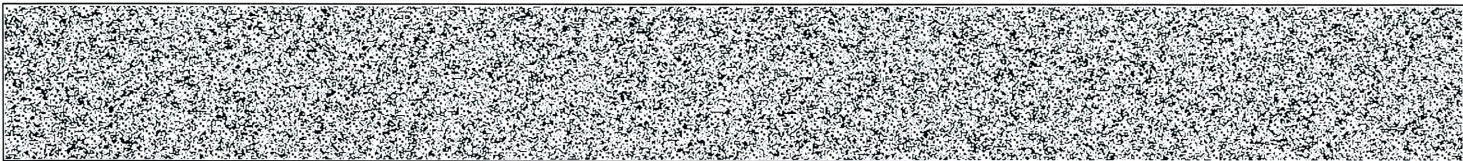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가.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사망,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0년 05월 25일 설정 2000년 05월 30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1974년 08월 08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년 01월 03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등기번호	019159
------	--------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2년 07월 0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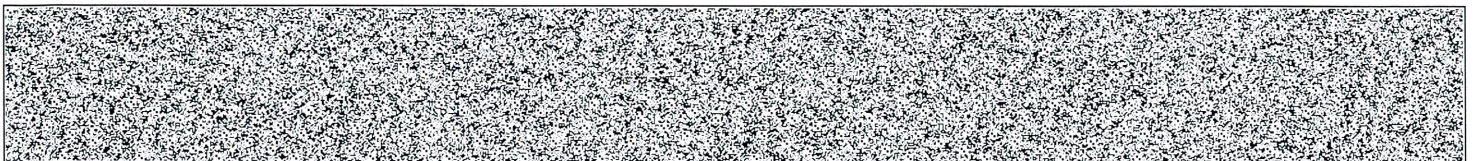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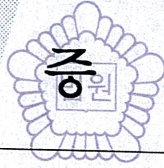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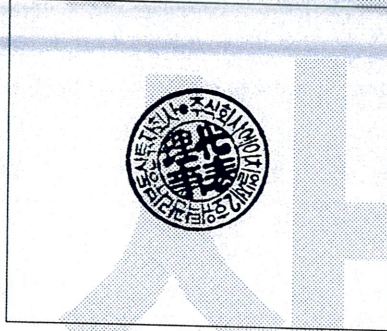


발행번호 119000204670105001710021200925110971209121017091S1 10 발급확인번호 1596-AAWF-NHYI 발행일:2022/07/05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8337390



상 호 : 주식회사 에이치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02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표이사 박영희
(750103-2)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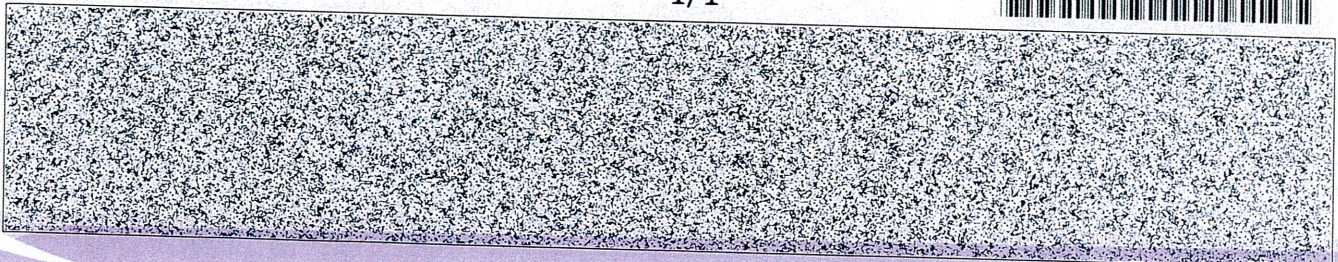
수수료 1,000원 영수함.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1042415160101021610025200923170343T8M1K1D1KOC111 5

발급확인번호 BAWY-UHDI-FKJ3

- 1/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등기번호	833739	
등록번호	110111-8337390	
상 호	주식회사 에이치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02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광고방법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광고하며, 2개 이상의 신문에 광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광고한다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 주	금 300,000,000 원
보통주식	60,000 주	

목적

(1)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부동산
- 2.부동산개발사업
- 3.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 4.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 5.증권, 채권
- 6.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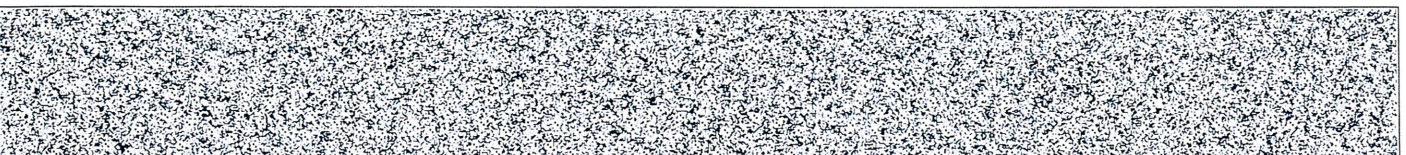
(2)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을 투자·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1.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 2.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 3.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 4.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박영희 750103-*****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004060223010901171002120092317037378316161307171 1

발급확인번호 7399-AAWG-IAYO

발행일:2022/07/19

등기번호	833739
대표이사 박영희 750103-*****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329동 1901호(원문동, 래미안슈르)	
기타비상무이사 김연희 801218-*****	
기타비상무이사 정현섭 801106-*****	
감사 박성언 790223-*****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22년 06월 17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2년 06월 17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2년 07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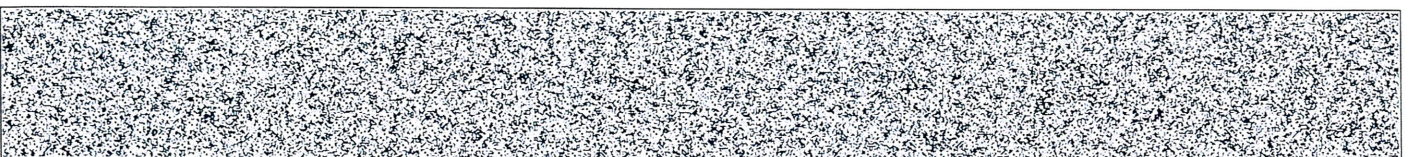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004060223010901171002120092317037378316161307171 1

발급확인번호 7399-AAWG-IAYO

발행일: 2022/07/19